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을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경정(2013귀속분:2015년12월 2차 경정결정으로 차액 정산후 지방소득세분 2015.12.31. 납부함)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:원)

부과취소 건 수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
1건	10,866,060	10,866,06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통보내역 및 과세내역 1부. 끝.

주무관 **김용경** 지방소득세3팀 **최선균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02/26 **김용운**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6586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32 /전송 02-3423-8895 / young6912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